

ISO-14000 TC 207 총회 및 SC3 국제회의의 결과

-ISO CD 14021 환경라벨링중

환경성 자기주장에 관한 세부지침-

박 룡 / 환경보전협회

1995년 6월 24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개막된 국제환경표준화총회(TC 207) 및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작업반(Working Group)회의는 총회로서는 국제환경표준화가 시작된 이후 미국, 호주 회의에 이어 3번째를 맞이하는 회의이다. 3번째회의를 맞이하면서 초기의 세계적관심이 현재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고있는 느낌이 들고, 참가 각국의 열기 또한 대단하다.

오슬로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각 SC(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진흥청·경영자 총연합회와 환경보전협회를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가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미국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하였으며 이번회의에 70명의 대표를 참여시켰다.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국제환경표준화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각

분과 별로 다음회의까지 계속하여 정리해 보겠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본 환경보전협회가 사무국으로 있는 SC3 환경라벨링 분과의 결의사항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환경성자기주장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상(인) 또는 그러한主張으로부터 利得을 보게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주장은 陳述(statement)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제품 또는 포장 라벨의 심볼 또는 그래픽, 제품 문귀(product literature), 기술잡지/회보, 광고, 공표/선전(문), 텔레마케팅 등 일 수 있다.

用語와 定義에 관한 이 규격은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마케팅에 있어서 준비되어질 環境 크레임의 여러가지 중 하나이다. 둘째 규격은 환경 크레임에 있어 상징(symbol)의 사용이 될 것이며, 셋째 규격은 立證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환경라벨링 국제표준/규격은 환

경라벨링에 대한 보다 일반/공통의 접근법 중 몇 가지를 망라한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이것은 국제표준화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당시(1991년 경) 현존하는 프로그램과 접근방법의 범위에 대한 질서정연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라벨링에 관한 ISO/IEC SAGE소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환경라벨링 접근방법에 대한 記述/모사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환경크레임의 확신은 환경라벨링 규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환경라벨링은 그러한 크레임(주장)이 개선되어질 때 전과정 고려가 취해질 것을 요구한다.

환경라벨링에 대한 접근법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되어졌다. 그런데 그런 환경라벨링 접근법은 현존하는 분류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완결되어 지지 않는다. 이것은 분류체계가 현재의 분류 접근법의 이점 또는 어떤

형태의 장점에 대한 판단 보다도 접근법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1. 범 위

이 규격은 환경성 자기주장을 취급한다. 그것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환경크레임에 대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를 수립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환경크레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사용을 위한 규칙을 규정하고 제공한다. 실험과 입증방법은 별도의 규격(*ISO 14023*, 마련 중)주제가 될 것이다.

규격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정보, 크레임 또는 라벨링에 앞서 머리말/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그것을 무시/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 1) 많은 국가와 지역에선 포장에 적용되는 특정 법적 요건을 갖고 있다. 이 규격의 사용자는 그런 요건에 유의해야 할 것을 권고(*advised*)받는다.

2) 지속가능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현재도 연구중에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경성 자기주장은 지금으로서는(*at this time*) 적절치 않다.

동기준의 전후관계에서 볼 때, 환경 크레임이란 상품과 용역의 공급과정상 무슨 수단에 의해서든 이용되는 어떤 **선언** 또는 **기초**를 말한다. 그런데 그같은 공급과정에 있어서는 상품과 용역의 제조, 사용, 처분으로 주변환경에 영향—그 영향이 어떤 지방에만 미치든 또는 동기준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정보를 미리 배제하거나 지나치는(*over ride*)것

은 아니다. 이 기준의 범위는 동물 실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a) **商品**과 서비스의 공급(*supply*)과 관련한 환경 크레임에 대한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며 (b) 환경 크레임에서 사용되는 특별 용어의 사용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1. 1. 목적

이 규격의 목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환경부하 및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운용 목적은 환경 크레임을 할 경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예상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a) 정확하고, 입증가능한, 기반적이지 않은 환경 크레임

(b) 시장(力)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개선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잠재성을 증가시킴

(c) 보다 낮게 구매자로 하여금 정보화된 선택을 가능케 함

(d) 보충/공인되지 않은 크레임의 방지 및 최소화

(e) 시장 혼란의 감소 그리고

(f) 국제무역에의 장애 및 제한의 감소

2. 관련 규격

관련 규격은 다음 출판물을 지칭한다.

ISO/NP 14020 환경라벨링—모든 환경라벨링의 기본 원리

ISO/NP 14023 환경라벨링—실험 및 입증방법론

3. 정 의

이 규격에서 적용되는用語는 다음과 같다.

· N 39(94.9)—크레임(=주장, 선언): 공급 과정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슨 수단에 의하건 적용되고 의미되어지는 어떤 선언 또는 기술

3. 2 환경크레임

원료 추출, 생산, 유통,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및 처분으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무슨 수단에 의하여 **記述**(*describe*)하고 의미(*imply*)하는 환경선언, 이것은 국지적, 지역적 또는 전지구적 영향을 뜻하기도 하고, 개인이 사는,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 N 39(94.9)—Qualified Claim—An environmental claim with an explanatory statement.

3. 4 환경성 자기 주장

독립된 3자 인증 없이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상인 또는 그러한 주장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경크레임

3. 5 설명 진술(서)

환경 크레임이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적절히 이해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진일보한**(*further*)설명

· 39행 : N 39(94.0)—“any further ……needed to ensure that an……”

3. 6 포장/포장하는 것

일용품 또는 제품을 보호하고, 담고, 또는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또한 항목. 포장은 또한 그것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물질항목일 수 있고 또는 함께 포함될 수도 있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제품관련 정보를 전달할 목적의 한제품 또는 그것이 **容器**일수 있다.

3. 7 질적 환경 주장

주장의 한계를 記錄한 어떤 설명
진술서가 수반되는 것

3.8 폐기물

환경에 배출되거나 처분(버려진)
된 발생자가 더 이상 사용치 않는
것.

4. 일반 지침

4.1 종합 지침

주: 종합 지침을 위한 참고자료
는 ISO/NP 14020 환경 라벨링의 일
반 원칙이 될 수 있다.

4.1.1 환경성 자기 주장 및 어떤
설명적 진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정확하고 기만적이지 않아야
함

(나) 구체(실체)화 되고 입증가능해
야 함

(다) 특별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
되고, 단지 적절한 문맥 또는 배경
하에 사용되어야 함

(라) 주장(크레임)이 관련된 특별하
속성에 관해 명확하고 특정적이어
야 함

(마)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지
않아야 함

(바) 그의 전과정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환경영향과 관련하
여 의미가 있어야 함

(사) 그것이 똑같이 읽혀질 수 있도
록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아) 그 크레임(주장)이—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독립된 제3자 조직
에 의해 승인을 받거나 인증을 받
는 것을 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함

4.2 기초 기준

4.2.1 더 이상의 진술에 대한 일
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다음의 것이
전체지침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기
준을 확인한다. 특히, 특별한 주장

의 하나가 이 규격에 언급되었건
새로운 주장이건간에 환경 크레임
을 하기 위한 제안은 그 주장이 4.
1.1 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확보하
여야 한다.

4.2.2 제공된 정보는 환경개선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속성을
特定해야 한다. 환경성 주장은 직접
적이든 암시적이든 존재하지 않는
환경상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이 말하는 제
품 및 서비스 또는 어떤 속성의 환
경적 이점을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4.2.3 글자 그대로는 사실이지
만, 구매자에 의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성 주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관련 사실을 누
락시킴으로써 잘못된 길로 나갈수
있는 환경성 주장은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4.2.4 무조건적 환경주장은 아
무 조건이 없는 모든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이 타당할 때 이루어
져야 한다.

4.2.5 환경우수성의 비교 주장
또는 개선과 관련한 환경 크레임은
특정적이어야 하고, 타당하며 그 비
교의 기초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특히, 환경 크레임은 최근에 어
떤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관련되어야 한다. 비교는 단지 다음
과 함께 행해져야 한다.

(1) 출판된 규격(기준) 또는 인식
된 시험 방법

(2) 또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공
급되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비교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4.2.6 환경 크레임이 사전에 존재
하는 그러나 과거에 공개되지 않은
속성에 기초를 두는 경우에 그 환
경 크레임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그

주장이 최근의 제품 또는 공정변화
에 기초한다는 것을 믿게 될 지도
모를 그런 방식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4.2.7 환경크레임은 최종 제품
과 관련하여 진실되어야 할 뿐 아
니라 전과정에 대한 모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4.2.8 동일한 환경적 이점은 두
번 이상 주장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의 적절성과 언어배열은 아직
WG2에서 마무리 되지 않았다) 그
것은 어떤 속성 또는 속성들을 기
술하거나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4.2.9 만일 환경 크레임이 단지
그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또는 내용
물에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단지 그 서비스의 요소에 적용된다
면 이같은 정보는 명백히 진술되어
야 한다.

5. 적절성 및 환경 크레임의 입증

5.1. 환경크레임의 적절성

5.1.1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성
이 없거나 아주 관련성이 적은 환
경 크레임은 주장되지 않아야 한다.

5.1.2 제품 범주와 관련성이 없
는 구성 요소 혹은 특성의 유무에
기초한 환경크레임은 주장되지 않
아야 한다.

5.1.3 환경 크레임은 대응되는
환경영향이 발생할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제조업
자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환경크레
임은 그 제품이 만들어진 지역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비
슷하게 그 제품의 사용, 재활용 또
는 처분으로 인한 利點과 관련된
환경 크레임은 그 제품이 판매된

지역과 여건에 관련되어야 한다.

5. 1. 4 환경 크레임은 잠재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 환경적 이점과 관련되어야 한다.

5. 2 환경 크레임의 입증

5. 2. 1 입증방법론은 동일한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고 반복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초안 註: 이런 문제는 ISO/NP 14023, 실험 및 입증방법론에서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5. 2. 2 환경 크레임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5. 2. 3 (“.....”가 “없음”)이라는 환경 크레임은 그 특정 물질의 수준이 인식되는 자취/흔적 오염물질로서 발견되어지는 것 보다 많지 않을 때 주장되어야 한다.

초안 註: ISO/NP 14023 실험 및 입증 방법론에서 “흔적을 남기는 양”에 대한 입증 절차가 언급될 것이다.

6 일반적 환경 크레임

막연하고 특정적이지 못하며, 어떤 제품이 환경적으로 이득이 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는 환경 크레임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지 않아야 할 환경 크레임으로써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보다 환경친화적인”, “지구 친화적인”, “오염되지 않은”, “그린의”, “돌고래 친화적인”, “자연의 친구”, 및 “오존 친화적인” 이러한 것은 예에 불과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94년도 국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실적현황

■ 업종별 투자실적

구 분	투 자 현 황 (백만원)		
	'93	'94	비 율 (%)
총 계	608,829	802,397	100.0
1. 음·식료품제조업	43,227	47,341	5.9
2. 섬유제품제조업	27,397	48,144	6.0
3. 펄프·종이제조업	63,927	22,467	2.8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9,483	50,551	6.3
5. 석유정제품제조업	29,833	64,192	8.0
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871	12,036	1.5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962	28,084	3.5
8. 제1차 금속산업	28,615	51,353	6.4
9. 조립금속, 기계, 장비제조업	18,265	34,503	4.3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9,132	6,419	0.8
11. 전기·기계등 제조업	73,059	96,288	12.0
12. 자동차, 트레일러등 운송장비	13,394	16,048	2.0
13. 기타 제조업	252,664	324,971	40.5

■ 기업규모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별	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93	'94	'93	'94	'93	'94	'93	'94
총계	608,829 (100%)	802,397 (100%)	231,355 (38%)	433,294 (54%)	170,472 (28%)	160,479 (20%)	207,002 (34%)	208,624 (26%)
1. 음·식료품제조업	43,227	47,341	16,426	25,564	12,004	9,468	14,697	12,309
2. 섬유제품제조업	27,397	48,144	10,411	25,998	7,671	9,629	9,315	12,517
3. 펄프·종이제조업	63,927	22,467	24,292	12,132	17,900	4,493	21,735	5,841
4. 화합물 및 화학 제품제조업	19,483	50,551	7,403	27,298	5,455	10,110	6,624	13,143
5. 석유정제품제조업	29,833	64,192	11,336	34,664	8,353	12,838	10,143	16,690
6.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4,871	12,036	1,851	6,499	1,364	2,407	1,656	3,129
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962	28,084	9,486	15,165	6,989	5,617	8,487	7,302
8. 제1차 금속산업	28,615	51,353	10,874	27,731	8,012	10,271	9,729	13,352
9. 조립금속, 기계, 장비제조업	18,265	34,503	6,941	18,632	5,114	6,901	6,210	8,971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9,132	6,419	3,470	3,466	2,557	1,284	3,105	1,669
11. 전기·기계 및 통신장비제조업	73,059	96,288	27,763	5,1995	20,457	19,257	24,840	25,035
12. 자동차,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13,394	16,048	5,090	8,666	3,750	3,210	4,554	4,172
13. 기타 제조업	2,562,664	324,971	96,012	175,484	70,746	64,994	85,907	84,494

■ 방지시설업체 규모(자본금)별 수주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93	'94	'93	'94	'93	'94	'93	'94
총계	608,829	802,397	269,074	369,435	295,916	388,455	43,839	44,507
10억이상(165개업소)	278,673	569,212	86,910	254,910	155,947	279,687	35,816	34,615
5억~10억(279개업소)	302,759	215,357	176,512	110,830	122,214	9,517	4,033	9,536
2억~5억(279개업소)	27,397	17,828	5,652	3,695	17,755	13,597	3,990	536

<그림 1> 참조

■ 오염원별 공사실적

(단위, 건수, 백만원)

구분	'84	'86	'88	'89	'90	'91	'92	'93	'94
공사건수	2,687	3,240	3,462	4,382	4,442	6,304	5,770	5,531	5,786
대기	1,725	1,839	2,170	2,707	2,657	3,692	3,183	3,250	3,234
수질	799	1,227	953	1,167	1,343	1,763	1,800	1,695	2,006
소음	83	174	339	509	442	849	787	586	546
공사금액	97,106	170,759	288,734	303,440	383,074	595,552	868,290	608,829	802,397
대기	41,530	57,536	107,464	112,230	166,518	257,592	360,736	269,074	369,435
수질	53,602	109,435	172,402	171,450	202,858	307,214	384,105	295,916	388,455
소음	1,947	3,788	8,668	19,760	13,698	30,746	123,449	43,839	44,552

〈그림 1〉 방지사설업체 규모별 수주 실적

